

기부금품 접수 및 배분 규정

제정 2024.02.26. 규정 제25호
전부개정 2026.02.12. 규정 제2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양주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배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금품’이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말한다.
2.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지원대상과 사용 용도를 지정한 기부를 말한다.
3. ‘비지정기부’란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기부금품으로서, 재단이 추진하는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금품을 말한다.
4.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부금품의 모금유형) 기부금품의 모금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공익법인 기부금품 :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부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기부된 금품
2. 연합모금 기부금품 :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 수행을 위하여 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가 연합하여 모금하는 금품

제4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재단의 기부금품 접수 및 배분 등의 제반사항에 적용한다.

제2장 기부금품의 접수

제5조(공익법인 기부금품의 접수) ① 재단은 공익법인 기부금품에 관한 모집행위를 할 수 없다. 단,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호에 의거한 자발적인 기탁의 경우 남양주시 기부심의위원회의 승인 후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② 공익법인 기부금은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이용하여야 한다.

③ 공익법인 기부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익법인 기부물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접수된 공익법인 기부물품에 대하여 자발적 접수 여부, 법적 금지물품 여부, 지정 기탁 및 조건부 기탁내용 등을 남양주시 기부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검토하여야 한다.

⑥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연합모금 기부금품의 접수) ① 재단은 사회복지사업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합모금을 통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② 연합모금 기부금은 모금회의 연합모금 전용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연합모금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 재단은 기부자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접수하여 모금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합모금 기부물품을 모집한 경우 재단은 기부자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을 접수하여 모금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기탁 기부금 비율 설정) 이 규정의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을 기탁하는 경우 기탁자의 동의 하에 기부금 총액의 10% 이상을 비지정 기부금으로 설정(기탁)할 수 있다.

제8조(기부금품 영수증의 발행) 재단과 모금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63의3 따른 기부금영수증을 기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모금의 제외대상) 재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모금은 모금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2. 정치적·특정 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호와 유사케서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기부물품 기부가액 산정) ① 기부물품에 대한 기부가액 산정은 물품구입 영수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기부자로부터 접수하여 산정한다.

②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기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산정한다.

제11조(기부물품 접수 제한 범위) 재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부물품으로 접수할 수 없다.

1. 마약, 술, 담배 등 사회통념적으로 불건전하거나 국민의 건강을 심각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2. 사회적으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물품
3. 사회통념상 사치성 품목으로 판단되는 물품
4. 도난물품 또는 유통, 취득 경위가 불확실한 물품
5. 식품 및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지원을 고려할 때 유효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6. 의약품 중 관련 인증기관의 허가를 득하지 못한 물품
7. 작물 또는 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채권, 채무 등의 문제로 법적인 다툼이 있는 물품
8. 배분대상자로부터 수요가 없는 물품
9. 중고현물
10. 손상(변색, 변질, 변형, 파손 등)된 물품
11. 기타 위의 각 호의 사항들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제12조(기부금품의 반환)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급된 기부금영

수증을 회수한 후 기부자에게 기부금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품을 기부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2. 기부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배분이 완료된 기부금품인 경우

제3장 기부금의 배분

제13조(배분 기본원칙) ① 배분은 특정분야, 특정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 ② 배분은 배분 대상자 간의 형평성과 지역적인 특수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 ③ 효과적인 배분사업을 위하여 건당 지원한도액과 사업비의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배분대상자) ① 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자(이하 “배분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또는 시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분대상자가 될 수 없다.
 2.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
 3. 그 밖에 배분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연합모금 후원금의 경우에는 배분대상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한정한다.

제15조(배분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은 이를 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사업
2.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
3. 정치·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
4.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

5.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
6. 그 밖에 재단의 배분심의위원회 및 공모사업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배분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비용

제16조(기부금 사업의 종류) 재단에서 행하는 기부금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 : 해당 연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공모 형태로 신청을 받아 배분하는 사업
2. 지정기탁사업 : 기부자가 기부금의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한 기부에 대하여 그 취지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3. 기획사업 : 재단이 그 주제를 정하여 직접 추진 하거나 배분대상자로부터 제안 받은 내용 중에서 선정하여 배분하는 시범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4. 긴급지원사업 :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야에 배분하는 사업

제17조(배분사업의 과정) 배분사업은 배분기준 공고, 배분신청 및 심의, 배분결정통지 및 지급, 평가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배분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과정을 생략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배분사업의 심의·결정) 배분사업의 배분대상은 배분심의위원회 또는 공모사업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며, 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19조(배분취소 및 환수) 배분결정 통지 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분심의위원회 또는 공모사업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규정된 배분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비용이 발견된 경우
2. 배분을 받은 자가 배분금을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3. 배분대상 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당해 배분과 관련하여 재단에 제출하거나 보고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5. 그 밖에 배분심의위원회 또는 공모사업선정심사위원회에서 배분취소 및 환수를 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제4장 기부물품의 배분

제20조(배분 기본원칙·대상·예외대상) 기부물품 배분의 기본원칙, 대상, 배분 예외대상에 관한 규정은 제13조부터 제15조를 따른다.

제21조(인수확인) ① 기부물품을 배분하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배분을 받는 자가 고령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접 인수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달자의 인수확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법인·기관·단체 및 시설(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배분하는 경우 대표자 명의의 인수확인증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인 등을 통한 개인 배분의 경우 기관 대표자 명의의 인수확인증으로 배분대상자의 인수 확인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통한 개인 배분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인수확인증과 함께 배분을 받은 자의 명단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가증권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인수일자, 인수자(또는 기관)의 인적사항, 품목, 수량 등이 명시된 인수확인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⑥ 해외 지원 및 제16조 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경우 배분을 받은 자의 명단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⑦ 재단은 기부물품이 최종 배분대상자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인수확인증을 통해 항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22조(기부물품사업계획서 제출) ① 법인 등이 기부가액 1,000만원 이상의 기부물품을 배분받는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물품을 배분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기부물품 배분의 표시) ① 기부물품을 배분대상자에게 배분 시 재단과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배분사업의 성격에 따라 표시방법을 정한다.

1. 배분하는 기부물품에 별도의 스티커, 도장 등 재단이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할 수 있는 제작물을 부착 또는 표시한다. 단, 배분대상자에게 수치심을 줄 우려가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인수확인증에 재단이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 배분대상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기부물품의 관리) 재단은 [별지 제11호 서식]과 [별지 제12호 서식]을 기록하여 기부물품과 유가증권에 대한 입고 및 출고 사항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부금품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및 동법시행규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규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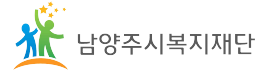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6. 2. 1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공익법인 후원금 기탁신청서



기부자 (명칭/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득세법 제1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주소				
대표자 (*법인일 경우)	휴대전화			이메일
기탁사유			사용목적 (사용용도)	
정기기부			일시기부	
은행명	예금주	입금자명		
계좌번호	입금계좌			
약정기간	입금예정일			
기부금액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기부금액	

본사(본인)는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탁하고자 신청하며, 기부금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성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명칭/성명)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남양주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고지 후 수집된 정보는 이용목적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e-mail	기부 관련 업무 수행 (기부신청, 기부내역확인, 확인서 발급, 기부자서비스)	10년간 보존 후 파기 (관계법령에 의거)
(선택) 기부금결제정보(CMS출금계좌, 카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할 경우 기부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기타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발급	10년	소득세법 제160조의3 및 시행령 제208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제공받는 곳	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금융결제원, KG이시스, 해당은행	(CMS)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카드)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소유주, 생년월일	기부금자동결제신청 동의확인	기부금 결제 중단 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부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선택)

제공받는 곳	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남양주시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e-mail, 기부금액	기부안내를 위한 정보공유 및 명예의전당 설립 등 기부자 예우	기부 중단 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성명	법정대리인의 연락처	정보주체와의 관계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위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수집이 가능함.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7)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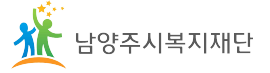
기부자(명칭/성명)

(인)

(재)남양주시복지재단 귀중

7)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동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공익법인 현물 기탁신청서



기부자 (명칭/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득세법 제1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주소						
대표자 (*법인일 경우)	휴대전화	이메일				
기탁사유						
사용목적(사용용도)						
기부금액 ※ 내용이 많을 경우 세부내용 별첨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기부환산금액	비고(판매가)
기부(예정)일	년	월	일			

년 월 일
기부자(명칭/성명)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남양주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고지 후 수집된 정보는 모금회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e-mail	기부 관련 업무 수행 (기부신청, 기부내역확인, 확인서발급, 기부자서비스)	10년간 보존 후 파기 (관계법령에 의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할 경우 기부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기타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발급	10년	소득세법 제160조의3 및 시행령 제208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선택)

제공받는 곳	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남양주시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e-mail, 기부금액	기부안내를 위한 정보공유 및 명예의전당 설립 등 기부자 예우	기부 중단 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성명	법정대리인의 연락처	정보주체와의 관계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위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수집이 가능함.

본인(본사)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8)

년 월 일

기부자(명칭/성명)

(인)

(재)남양주시복지재단 귀중

8)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동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현금 지정기탁신청서

기부자 (명칭/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근거: 국제기본법 시행령 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득세법 제1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대표자 (*법인일 경우)		담당자/연락처	
지정내용	<input type="checkbox"/> 지정 <input type="checkbox"/> 일반	기탁구분	<input type="checkbox"/> 일시 <input type="checkbox"/> 정기
지정대상			
기부금액	입금(예정)일		입금계좌
	입금자명		

본사(본인)는 위와 같이 기부금을 지정기탁하고자 신청하며, 기부금의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귀회 회규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일반성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명칭/성명) (인)

- ☞ **안내사항**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정대상 가운데 부적격자가 있는 경우
2. 지정대상과 기부자가 특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3. 기타 지정내용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회규에 위배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 절차를 준수하며, 고지 후 수집된 정보는 모금회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e-mail (선택) 기부금결제정보(CMS출금계좌, 카드)	모금회 기부지원 업무의 수행 (기부신청, 기부내역확인, 확인서 발급, 기부자서비스)	10년간 보존 후 파기 (관계법령에 의거)

- ☞ 개인정보의 위탁회사 및 위탁업무의 구체적인 정보는 모금회 홈페이지 [http://www.chest.or.kr]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할 경우 기부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기타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발급	10년	소득세법 제160조의3 및 시행령 제208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제공받는 곳	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금융결제원, KG이니시스, 해당은행	(CMS)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카드)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소유주, 생년월일	기부금자동결제신청 동의확인	기부금 결제 중단 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부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선택)

제공받는 곳	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경기북부 10개시군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e-mail, 기부금액	기부안내를 위한 정보공유 및 명예의전당 설립 등 기부자 예우	기부 중단 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경기북부 10개 시, 군 :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성명	법정대리인의 연락처	정보주체와의 관계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위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수집이 가능함.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10)

년 월 일

기부자(명칭/성명)

(인)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귀중

9) 특수 이해관계 :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등 국제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0)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동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정기기부(CMS) 신청서

기부자 (명칭/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근거: 국제기본법 시행령 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득세법 제16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주소		
대표자(*법인일 경우)	담당자/연락처	
지정내용	시/군에서 추천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지원하도록 위임함	
기부금액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30,000원 <input type="checkbox"/> 5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원)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와의 관계	
이체일자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약정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본사(법인)는 위와 같이 기부금을 지정기탁하고자 신청하며, 기부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귀회 회규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일반성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명칭/성명) (인)

☞ 안내사항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정대상 가운데 부적격자가 있는 경우 2. 지정대상과 기부자가 특수 이해관계¹¹⁾에 있는 경우 3. 기타 지정내용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과 회규에 위배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고지 후 수집된 정보는 모금회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e-mail (선택) 기부금결제정보(CMS출금계좌, 카드)	모금회 기부지원 업무의 수행 (기부신청, 기부내역확인, 확인서발급, 기부자서비스)	10년간 보존 후 파기 (관계법령에 의거)

☞ 개인정보의 위탁회사 및 위탁업무의 구체적인 정보는 모금회 홈페이지 [http://www.chest.or.kr]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할 경우 기부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기타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발급	10년	소득세법 제160조의3 및 시행령 제208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필수)

제공받는 곳	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금융결제원 KG이시스, 해당은행	(CMS)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카드)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소유주, 생년월일	기부금자동결제 신청 동의확인	기부금 결제 중단 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기부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선택)

제공받는 곳	항목	제공목적	제공기간
경기북부 10개시군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e-mail, 기부금액	기부안내를 위한 정보공유 및 명예의전당 설립 등 기부자 예우	기부 중단 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경기북부 10개 시, 군 :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정보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성명	법정대리인의 연락처	정보주체와의 관계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위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수집이 가능함.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¹²⁾

년 월 일

기부자(명칭/성명) (인)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귀중

11) 특수 이해관계 :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주주·출자자 등 경영자배관계에 있는 자 등 국제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12) 근거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동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기부금품의 모집), 소득세법 제160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현물 인수확인증

▣ 품 목 :

▣ 수 량 :

위 물품을 정히 인수하였습니다.

1. 상기 물품은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수기관은 지원 현물의 매도 및 제삼자에게 전매, 교환(바자회 등으로 재판매, 기념품 제공 포함)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 현물의 부정 사용을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인수기관은 남양주시복지재단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추가자료(배분 대상자 명부, 사진 등)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3. 인수기관은 상기 의무사항 위반 또는 불이행 시 아래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남양주시복지재단의 배분규정에 의거한 제재 (취소 및 환수 등)
 - 남양주시복지재단의 환수요구 불응 시 민·형사상 책임

년 월 일

소속(기관) :

연 락 처 :

인 수 자 : (인)

남양주시복지재단 귀중

현물 인수확인증

순번	소속(기관)	품목	수량	수령일	연락처	인수자 서명

1. 상기 물품은 취약계층 지원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인수기관은 지원 현물의 매도 및 제삼자에게 전매, 교환 (바자회 등으로 재판매, 기념품 제공 포함)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원 현물의 부정 사용을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인수기관은 남양주시복지재단의 요구에 따라 별도의 추가자료(배분 대상자 명부, 사진 등)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3. 인수기관은 상기 의무사항 위반 또는 불이행 시 아래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 남양주시복지재단의 배분규정에 의거한 제재 (취소 및 환수 등)
 - 남양주시복지재단의 환수요구 불응 시 민·형사상 책임

년 월 일

남양주시복지재단 귀중

현물 사업계획서

【품명: 】

신청 기관	기관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운영주체 (법인)명		운영주체 고유번호	
	담당자명		담당자 핸드폰번호	
			담당자 이메일주소	
	기관전화번호		기관팩스번호	
	설립년월일		홈페이지	
	사업수행기간			
	결과보고자료 제출예정일			
	인수증 총 취합 제출예정일			
주 소				
사업명				
사업대상		대상자수 (대상기관수)		
사업목적				
사업시행계획				
사업 시행 계획	일 정	내 용		

년 월 일

기관대표자 : (인)

사업 결과보고서

1. 사업집행결과 및 내용 (사진 보유 시 첨부 요망)

	기관명	
	물품수량	
	계획	결과
사업 집행 일정	*신청/현물수량/배분완료예정 등 일정 명시	*신청/현물수량/배분완료 결과 시점 명시
	기부자:	
	물품종류:	배분수량:
	수량:	배분완료 시점:
	배분예정 완료일정:	

2. 사업효과(요약정리)

※ 본 사업을 통해 얻은 긍정적인 부분 등 명시

예) 취약계층 위생문제 해결, 비위생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향후 자활 및 자립심 고취 등

3. 사업평가(요약정리)

※ 본 사업 중 개선 되어야 할 사항 등 명시

예) 위생문제 해결, 건강한 생활 도모 등

4. 관련자료(사진 및 입증관련 서류)

위와 같이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대표자 : (인)

후원물품관리대장

분류		입고								출고		잔여	
입고 번호	연번	후원자	후원 일자	카테 고리	후원 물품	단위	단가	수량	환산액	수량	환산액	수량	환산액

유가증권 관리대장

연번	모집 현황					배분 현황				
	일시	후원자	금액	단가	수량	일시	배분 대상자	금액	단가	수량